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42

발의연월일: 2021. 3. 17.

발 의 자:임오경·이규민·서영교

이병훈 · 박 정 · 오영환

이수진 • 박상혁 • 한준호

김홍걸 • 이상헌 • 김영주

이원택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함)가 발간한 '2019 사행산업 관련 통계집'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사행산업 총매출액은 22조 6,5 07억원으로 이는 2010년 17조 3,270억원 대비 약 30%가 증가한 수치이며 사행산업 규모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. 그 영향으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(이하 "센터"라 함)의 도박 중독 및 도박 문제 치유실적도 약 7만 5천 건을 기록하며 전년도 대비 12.3%가 증가하는 등 도박 중독의 예방·치유에 대한 수요 및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.

이에 도박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·치유 사업을 담당하는 센터의 조직 및 예산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원에 도박 문제의 예방·치유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도박 문제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의 위원으로 도박 문제의 예방·치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(안 제6조제2항).
- 나.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역센터를 1개 이상 설치·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,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별도의 지역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제7항).
- 다. 위원회가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·치유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성하기 위하여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·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비율을연간 순매출액의 0.35% 이상 0.5%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 규정하여 하한선을 설정함(안 제14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"관련"을 각각 "및 도박 문제의 예방·치유 관련"으로 한다.

제14조제7항 중 "센터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"를 "센터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1개 이상의 지역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2항제1호에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"로한다.

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"1000분의 5"를 "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 5 0"으로 하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·징수 비율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 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부과·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	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
략)	같음)
②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	②
부의 사행사업에 관한 사무를	
소관하는 차관, 행정안전부차	
관,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행산업	
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	
과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 당연	
직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의 어	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	
문화체육관광부장관·농림축산	
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	
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	
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	
위촉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당	
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	
총리가 지명하고 위원은 당연	
직이 아닌 자가 과반수 이상이	
되도록 하여야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	2
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	
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	

었던 자로서 사행산업 관련 분야(관광・컴퓨터 및 정신 의학 분야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전공한 자

- 3. 사행산업 <u>관련</u> 분야의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
- 4. 사행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 성을 갖춘 자로서 비영리민 간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 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 천한 자

③ (생략)

~ ⑥ (생 략)

⑦ 센터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 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 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			· <u>및 도</u>
	박 문제의	예방ㆍ치유	<u> 관련</u>
3.		및 도박 등	문제의 예
	방・치유	관련	
4.		및 도박 등	문제의 예
	방・치유	관련	
<u> </u>	\ /리크] -l -	-1 () \	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) ① 제14조(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
> ⑦ 센터는 특별시·광역시·특 별자치시・도・특별자치도에 1 개 이상의 지역센터를 설치・ 운영하여야 하며, 「지방자치 법」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 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

⑧・⑨ (생략)

제14조의2(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| 저 부과・징수 등)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 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 간 순매출액(총매출액에서 환 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)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(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,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 화 평가 및 제1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행산업사업자별로 부담금의 부과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)에 해당하는 중 독예방치유부담금(이하 "부담 금"이라 한다)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「폐광지역 개 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 른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

<u> </u>
⑧・⑨ (현행과 같음)
제14조의2(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
부과・징수 등) ①
<u>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</u>
<u>50</u>
•

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카지노	
사업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	
지 아니한다.	
② ~ ⑨ (생 략)	② ~ ⑨ (현행과 같음)